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4. 3.

박성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4.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8회 국회(임시회)

- 제2차 정무위원회(2025.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0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2. 16.) 상정

- 제433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4. 1.) 상정

○ 제435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5. 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1차 정무위원회(2026. 5. 1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박성훈의원)

현행법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 등 서비스를 공급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 선 주)

(1)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보존 및 열람 제공 등

- ☐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의 거래기록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대한 기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거래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3조1항, 제33조제2항 신설, 제53조제2항제10호 및 제3항제11호).
- ☐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등의 거래기록 및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열람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해제된 계약에 대한 자료 부존재로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대한 산정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였는지 등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 이에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의 자료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료 확

인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해약환급금액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료를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사후 관리도 용이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에 대해서 거짓 이행 및 의무 불이행에 따라 3천만원 또는 1천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

- 현행법상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체결내용의 열람의무와 관련하여서도 거짓 이행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이행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제재 수준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의 자료 미보존시 법 준수 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자들의 해약환급금 지급 관련 서류 보존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명시되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용하는 의견임.

(2)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 또는 위반행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3항 제9의3호 및 제9의4호 신설).
-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또는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 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제조합에 대한 각종 감독·관리 권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제재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제조합 시정요구 등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 22건을 시정요구 등을 하였으나 3건을 미이행

하였고, 2024년도에 15건을 시정요구 등을 하였으나 1건을 미 이행 하였음.

□ 이에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징계·해임 요구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선불식 할부거래의 공제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앙행정기관 장은 시정명령 등을 불이행한 공제조합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한도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조합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용 의견이나,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수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고려할 때 공제

조합의 시정명령 불이행 관련 과태료 부과한도(1천만원)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민국위원)

- “위원회 대안” 마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대안반영폐기).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